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918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redacted]
	2. [redacted] 유한회사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3.

주 문

1. 원고 [redacted] 유한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은행은 은행업,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redacted] 유한회사(이하 '원고 유동화회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유동화하거나 이를 추심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 은행은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날인 2014. 1. 1. 이전에 A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위탁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우선수익자인 채권자를 위하여 일정기간 신탁재산의 담보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다가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대상자산을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을 수탁하였다.

2) 원고 유동화회사는 2014. 4. 30.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

3)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 및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위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한다)에 따라 원고 은행에 대하여 2014. 7. 15., 2014. 8. 14. 및 2014. 9. 5.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22, 제3호증의 1, 2, 3, 제5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유동화회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 유동화회사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유동화회사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우선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 유동화회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재산세 상당액만큼의 우선수익권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입게 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사실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라 보기 어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침해가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만일 원고 유동화회사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원고적격을 확장한다면 과세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사람 또는 과세물건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사람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따라서 원고 유동화회사가 신탁재산의 환가절차에서 우선수익권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은행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취소를 직접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유동화회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유동화회사의 소는 부적법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은행의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에서 위헌인 이 사건 부칙규정과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1993. 12. 27. 신설된 이후 약 20년 동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적이 없었음에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부칙규정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2)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규정은 실질과세의 헌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상 원칙에 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의 개정내용

구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법은 제107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는 한편, 제107조 제1항 본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3호를 신설하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는데, 그 취지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한편 이 사건 부칙규정은 위 개정규정을 2014. 1. 1.부터 시행되도록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과 같이 개정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해서도 위 시행일 이후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칙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가)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위 헌법조항에 위반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5. 3. 23.자 93헌바18, 31 결정 등 참조).

여기서 소급입법의 유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01. 4. 26.자 99헌바55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이미 재산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해서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재산세(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2014. 6. 1.분 재산세)부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려는 것일 뿐이므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14. 1. 1.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부과원인 사실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는 행위이고, 이는 원고 은행에게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4. 1. 1.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이다. 물론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법적상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의 존속을 신뢰한 원고 은행의 신뢰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 박탈의 문제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은행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의 원칙이 도출되는바(헌법재판소 1995. 10. 26.자 94헌바12 결정 등 참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위 99헌바55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이 신탁재산에 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은 종래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재산의 등기·등록명의인이 달라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었던 문제점(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참조)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충실을 도모하는 지방세법의 기본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공익상 필요와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다른 한편, 개정법으로 인하여 원고 은행이 침해받는 신뢰이익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일응 원고 은행의 비용 등 회수권이 침해될 여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개정법 제110조,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시가표준액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하고, 수탁자는 납부한 재산세를 신탁사무 처리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법익침해가 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 전에 형성된 신뢰이익의 손상정도와 개정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을 비교형량할 때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크든 작든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며,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함으로써 초래되는 수탁자의 신뢰 손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 은행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과세의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칙은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자 2000헌바4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오늘날 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 하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 등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과세대상 등을 선정한 결과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2. 24.자 2009헌바203, 2010헌바192, 20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는 비록 신탁 목적에 의한 제한은 있지만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를 갖추어 사실상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고 볼 수 있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을 위임하였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규정은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원고 은행은 이 사건 법률규정이 수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을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의 취지와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와 재산의 이전 내지 취득이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취득세를 같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은행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규정은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세수확보 또는 징수편의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규정 단서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개정법 제106조 제3항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탁자별 신탁재산,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서로 합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개정법 제119조의2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처분으로부터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원고 은행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 사건 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된 결과 원고 은행의 비용 회수권 등이 침해될 여지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4. 다. 2) 나)항에서 보았듯이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충실화를 달성하려는 공익과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침해받게 되는 재산권을 비교형량해 보면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인해 수탁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원고 은행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법률규정과 부칙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유동화회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정경희

판사 이승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목 록

순번	처분청	부과년월일	피처분자	재산세액
1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은행	649,610
2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은행	304,480
3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은행	304,480
4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은행	296,190
5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은행	730,910
6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은행	1,275,280
7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은행	544,340
8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은행	730,910
9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은행	522,430
10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은행	650,800
11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은행	481,260
12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은행	595,560
13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은행	1,143,110
14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은행	892,630
15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	622,290
16	[redacted]시장	2014-07-15	[redacted]은행	9,951,070
17	[redacted]시장	2014-08-14	[redacted]	79,490
18	[redacted]시장	2014-08-14	[redacted]은행	83,700
19	[redacted]시장	2014-08-14	[redacted]	86,250
20	[redacted]시장	2014-08-14	[redacted]은행	85,810
21	[redacted]시장	2014-08-14	[redacted]은행	248,210
22	[redacted]시장	2014-09-05	[redacted]은행	6,990,3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생략)
 나. 별도합산과세대상(생략)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